

혼인 기간·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30일
신고인 [] 분할연금 수급권자 [] 노령연금 수급권자	성명	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·국내거소신고번호)	
	전화번호(자택)			휴대전화번호	
	주소				
	전자우편주소(e-mail)				
배우자였던 사람	성명		주민등록번호		혼인 유지기간
					. . . ~ . . .
실질적인 혼인관 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	혼인 기간 중 . . . ~ . . .까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. (사유 : ☐ 실종 ☐ 거주불명 ☐ 합의 ☐ 재판)				
분할 비율 별도결정	유형		[] 당사자 간 합의 [] 재판		
	별도결정일		년 월 일		
	비율	합계		노령연금 수급권자	분할연금 수급권자
		100%			
대리인	성명			주민등록번호	
	전화번호(자택)		휴대전화번호		신고인과의 관계
	주소				
	신고인 확인 (인)			기관장 확인 (인)	
「국민연금법 시행규칙」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					
년 월 일					
신고인(대리인) (서명 또는 인)					
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					

신고인(대리인) 제출서류	1.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(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) 2.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(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) 3.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,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있음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4.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합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 1부(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※ 본 신고서는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지급 청구서 제출 후에 영 제4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결정되거나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- 서식상의 "분할연금 수급권자"에는 분할연금 신청구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자(분할연금 수급 예정자)도 포함합니다.
- 서식상의 "노령연금 수급권자"에는 분할연금 신청구에 따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자(노령연금 수급 예정자)도 포함합니다.
- "배우자였던 사람"이란 신고인이 분할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를, 신고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를 의미합니다.
- 수급권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, "주소"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. 전자우편 주소(e-mail)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.
- "혼인 유지기간"란은 전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을 적습니다.
- 합의서나 재판서에 분할 비율이 아닌 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로 환산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"대리인"란은 수급권자(신청구자)의 해외체류,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(신청구자)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,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.

※ "기관장 확인"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,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.

처리절차

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